등록번호	주택과-9412
등록일자	2016.3.29.
결재일자	2016.3.29.
공개구분	부분공개

주무괸	ŀ	주택행정팀장	주택과장	도시관리국장	부구청장	구청장
남호?	남호진 김 칭		안춘자	이진형	황치영	03/29 최창식
ē						
조						

투명한 공동주택 운영 및 부조리 제거 추진계획



도시관리국 주 택 과

요약지

투명한 공동주택 운영 및 부조리 제거 추진계획

- □ 추진근거: 구청장 지시사항(아파트 관리비 투명하게 집행 노력)
- □ 현황 및 문제점
 - O 2013~2015년 아파트 관리 실태조사 : 남산타운 등 총 8개 단지, 128건 적발
 - O 지적사항 조치 : 시정명령 85, 행정지도 41, 과태료 1, 수사의뢰 1.
 - 문제점: 단지마다 동일 반복되는 유형의 지적사항 지속 발생
- □ 중점추진방향
 - 엄격한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추진으로 실효성 제고
 - ▶탈법행위 처벌 강화. 지적사항 이행여부 점검. 분야별 기획조사 등
 - 주민들 스스로 지켜내도록 활발한 주민 참여 유도
 - ▶온라인 투표 도입, 의무공개목록 안내문 배포
 - 운영시스템의 공정성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지도감독
 - ▶관리규약 개정관리, 전문가 자문 지원, 관리자 교육 강화

□ 세부추진계획

【엄격한 실태조사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 추진】

현 행 (2013~2015)

- 정기조사(년 2~3개단지)
- 행정계도 위주 처분

개 선 (2016~)

- 행정처분 강화 ⇒ 실효성 제고
- 정기조사 + 지적사항 이행 점검
- 분야별 기획조사 : ①자체회계감사 점검, ②전문가자문 이행,③장기수선충당금 운영

【주민들 스스로 지켜내는 자율감시체계 구축】

- 공동주택 온라인투표제(k-voting) 도입
- ○「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」활성화로 주민자율감시 제고
 - 『아파트 관리 궁금증 직접 알아보기』 안내문 제작 홍보

【공정한 운영시스템 유지를 위한 지도감독 강화】

- 동별대표자 및 관리사무소장 교육 실시 : '해서는 안되는 일'에 대한 가이드라인
- 공동주택 관리「전문가 자문단」운영 및 지원 : 2개부문 17개분야 26명
- ○『공동주택 관리규약』적기 정비 추진으로 공정성·투명성 확보

□ 추진일정

○ 정기 실태조사 : 연중 운영 (분기 1회)

○ 실태조사 지적사항 이행(사후)점검 : 7월~ 8월 (실태조사 2년경과후)

○ 공사 및 용역 전문가 자문 이행 실태점검 : 9월~10월

○ 아파트 자체회계감사 결과 점검 :11월~12월

○ 장기수선충담금 운영 점검 : 3월~12월

○ 온라인투표 도입 (설명회 개최 : 4월) : 4월~12월

투명한 공동주택 운영 및 부조리 제거 추진계획

투명하고 맑은 공동주택 운영을 위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, 입주민의 재산과 권익 보호를 위해 부조리 없고 살고싶은 공동주택을 조성코자 함

추 진 근 거 □ 주택법 제59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 (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) □ 구청장 지시사항 (아파트 단지 운영의 부조리 제거방안 강구) | 중점추진방향 | ⇒ 비리 차단 및 주민자정체계 구축 | 엄격한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추진으로 실효성 제고 | ●탈법행위 처벌 강화, 지적사항 이행여부 점검, 분야별 기획조사 등 | □ 주민들 스스로 지켜내도록 활발한 주민 참여 유도 | ●온라인 투표 도입, 의무공개목록 안내문 배포 | □ 운영시스템의 공정성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지도감독 | ●관리규약 개정관리, 전문가 자문 지원, 관리자 교육 강화

공동주택 현황 및 전반적 문제점

□ 공동주택 현황

구분	총계	의무관리단지	임의관리단지
단지수	58	18	40
세대수	20,431	13,182	7,249

※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는 300세대 이상이거나,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 설치 ·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공동주택 및 150세대이상 주상복합아파트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, 아파트를 자치관리 또는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

□ 전반적 문제점

-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중 일부 아파트에서는 아파트 관리 문제로 민원이 지속 발생하는 등 입주민간 분쟁과 갈등이 상존
 - 남산타운아파트, 남산롯데캐슬아이리스, 신당삼성, 현대아파트 등
-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상가관리단과의 시설 관리에 대한 불협화음으로 다툼 자주 발생
 - 남산센트럴자이, 황학아크로타워, SK리더스뷰 등
- 임의관리 대상 아파트는 관리 문제로 인한 주민간 분쟁은 아직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, 폐쇄성으로 관리비 관련 비리 개연성 있음
- 동대표와 관리소장간에 선의적 견제가 필요함에도, 관리소장은 재계약 등의 안위를 위해 동대표의 의사를 거스르지 못하는 사례가 많음
- 아파트 관리 비리는 입주민의 무관심이 큰 요인이나, 대다수 입주민들은관심 부족

공동주택 관리 실태조사 현황 및 분석

□ 그간 실태조사 및 처분 현황(2013~2015)

	시행	저ᄎ			행정처분	<u>.</u>		
아파트명	년도	적출 건수	행정 지도	시정 명령	과태 료	고발	수사 의뢰	비고
남산타운	2013	14	4	8	1		1	
남산롯데캐슬아이리스	2013	12	4	8				
약수하이츠	2013	20	6	14				
신당현대아파트	2014	14	5	9				
남산센트럴자이아파트	2014	12	4	8				
래미안신당하이베르	2015	22	5	17				
신당삼성아파트	2015	22	7	15				
롯데캐슬베네치아	2015	12	6	6				

□ 실태조사 결과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

구분	주요 지적 내용
예산·회계 분야	- 예산 및 사업계획서 미수립(구체적 예산항목 없이 예비비 운영) - 잡수입을 관리비로 쓰지 않고,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 - 장충금 공사비를 타과목에서 부적정하게 사용 - 잡수입을 부녀회가 관리하거나, 잉여금으로 적립 -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부적정 사용 - 관리비 등 지출 증빙서류 부적정 징구 등 회계처리 소홀 등
입주자대표 회의·관리 주체 분야	-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독립성 미약 등 견제장치 부족 -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주체의 권한 침범(수의계약 등 이권개입) - 위수탁관리 재계약 절차 위반 - 동대표 선출 절차(투표방식, 구비서류 등) 부적정 운영 - 체력단련실 등 주민공동시설 위탁운영 방식 부적정 - 무단 용도변경, 안전관리계획 미수립, 관리규약 개정 부실
공사·용역 분야	- 물량 산출서, 내역서 등 도서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공사 발주 - 불공정 계약, 규정을 위반한 수의계약 남발 - 공사 이력 관리, 도서 분실 등 준공 및 시공관리 부실 - 참가자격 과도 제한 등 불공정한 계약절차 시행 - 관리주체의 형식적 관리 감독, 주민감시 및 자문단 형식적 운영
장기수선계 획·충당금 분야	- 형식적인 장기수선계획 수립으로 시설 노후 초래 - 장기수선계획 대비 수선충당금 과소적립으로 적기 보수·보강 불가 - 수선·보수공사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등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부적정 -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계획없이 사용

□ 문제점 및 대책

- 그간 계도 위주로 처분함에 따라, 관리 실태조사를 3개년동안 시행하였음 에도 단지마다 유사·동일 유형의 지적사항이 반복하여 발생되고 있음
- ▶ 타 단지에 대한 파급력을 높일 수 있도록, 조사결과 적출사항에 대한 처분강도를 높여 실효성 및 파급력 제고 필요
- 국토교통부는 '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', 서울시는 '관리규약 준칙'을 통해 비리 예방 및 차단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, 지속적으로 개선·정비해 오고 있으나

- 임기가 짧은(2년) 입주자대표회가 주택관계 법령을 미숙지하거나 관례에 따른 업무처리 등에 의한 지적사항 발생이 많음
- 전문성을 토대로 상호 견제·지원해야 할 관리주체가 종속적으로 운영 함에 따라, 운영시스템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음
- ▶ 정해진 시스템을 지켜나가도록,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·감독이 필요함



투명한 관리 및 비리방지 세부추진계획

【엄격한 실태조사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 추진】

현 행 (2013~2015)

- 정기조사(년 2~3개단지)
- 행정계도 위주 처분



개 선 (2016~)

- 행정처분 강화 ⇒ 실효성 제고
- 정기조사 + 지적사항 이행 점검
- 기획조사 : 회계감사 결과, 전문가 자문 이행, 장기수선충당금 운영 등

아파트 관리 실태조사 지속 실시

- 조사대상 : 실태조사 미실시단지(10개)
 - 민원발생이 많은 단지부터 우선 실시(단지별 별도 계획수립)
- 조사시기 : 분기 1회 (무작위 선정·불시조사)
- 조사방법
 - 회계사 등 외부전문가 참여를 통해 조사의 신뢰도 및 실효성 제고
 -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여부 사후관리를 통해 재발생 방지 추진
- 중점 조사사항
 - 관리비·사용료·잡수입 부과 및 징수실태, 예산회계 운영 적정성
 - 공사·용역 등의 입찰. 계약 시 국토교통부 지침 준수 실태
 -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운영 실태
 - 입주자대표회의·관리주체 아파트 관리 운영 실태 등

- 결과조치 : 엄정한 처분을 통해 동일사항 반복위반 방지
 - 계도위주 조치는 지양하고, 엄격한 행정처분으로 실효성 제고
 - ▶ 주택법령. 국토교통부 지침 위반 : 과태료 및 고발(벌금)
 - 관리규약 등 위반 : 1차 시정명령 후 미시정시 과태료 부과
 - 과태료 부과 횟수가 연2건 이상인 경우 다음연도(1년간) <u>공동주택</u> 지원사업 지원금 교부 중지
 - 각 <u>아파트 단지 게시판에 적발사항을 직접 게시</u>하여 입주민의 관심을 높이고,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에의 공개 여부도 확인

실태조사 지적사항 이행여부 사후관리 점검 실시(신규)

○ 시행시기 : 2016. 7~8월

○ 점검대상 : 2013년~2014년 실태조사 단지

실태조사 시행년도	아파트명 세대수 지적사항		지적사항	비고
00191 1	롯데캐슬아이리스	386세대	시정명령 8, 행정지도 4	
2013년	약수하이츠아파트	1,598세대	시정명령 14, 행정지도 6	▶ '15년 조사단지는
001411	신당현대아파트	942세대	시정명령 9, 행정지도 5	17년시행
2014년	남산센트럴자이아파트	273세대	시정명령 8, 행정지도 4	

※ 점검주기 : 실태조사 2년 경과년도 ⇒ 동대표 교체 주기(2년) 감안

○ **점검방법** : **자체점검반 구성 현장점검** (필요시 민간전문가 활용)

○ 점검내용

- 실태조사시 지적사항 시정여부 및 동일사항 지속여부 확인조사
- 실태조사 전·후 관리비, 잡수입 등 변화 여부
- 결과조치 : 기존 지적사항에 대해 동일 위반시 강력한 행정조치

관리분야별 기획조사 실시(신규)

≪아파트 자체회계감사 결과 분석 및 행정 조치≫

2015년부터 300세대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한 회계법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(주택법 45조의3) 하므로, 자체감사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결과보고서의 분석을 통해 필요시 행정조치 실시

○ 점검시기 : 2016. 11~12월

○ 점검대상 : 10개단지 (300세대이상 아파트)

○ 점검방법 : 회계감사 종료 후 10일이내에 결과보고서 수합

○ 점검내용 : 자체 회계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분석

○ 결과조치 : 위법이 명백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조치(과태료 등)

- 감사 미실시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(관리주체, 700만원)

- 감사 종료후 30일이내 k-apt 결과 미공개시 과태료(300만원)

- 감사결과 주민설명회 권고 및 감사의견(부적정)에 대한 후속조치

≪장기수선계획 및 충당금 운영상황 점검≫

공동주택의 효율적 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 단지의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조정,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집행실태를 점검·지도하여, 공동주택의 조기 노후화 방지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추진

○ 점검대상 공동주택 : 47개 단지

-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
- 승강기가 설치된 주택
-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
-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

○ 주요 점검내용

- 노후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조정의 적정성
-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급 적립 및 집행실태 점검

- 점검방법 : 1차 현황조사 후 문제 발견시 점검반 구성하여 현장점검
 - 장기수선계획 및 집행내역 등 관련서류 검토
 - 주요시설 현장 점검, 관리사무소장 및 입주자대표 인터뷰 등 병행
- 점검반 구성 : 3~4명으로 구성
 - 공동주택 관리, 전기설비·시설 등 건축분야 공무원 등
 -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(시설 분야) 등 활용
-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
 - 점검결과 문제점, 미흡사항 도출 및 개선방안 마련
 - 해당 공동주택에 점검결과 통보. 개선대책을 수립·이행토록 조치
 - 시정명령 불이행시 과태료 등 법적제재 조치

※ 주택법령상 제재 조항

- 위법한 장기수선계획 수립 또는 수선계획에 따른 유지보수 불이행(주택법 제101조제2항 제2호) ⇒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
- 장기수선계획 미수립 또는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불이행(주택법 제101조제3항 제10,12호) ⇒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
- 자치단체장의 시정명령 불이행(주택법 제101조제3항 제16호 제98조제12호)
 - ⇒ 5백만원의 과태료 처분.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

≪공사 및 용역분야 전문가 자문 이행실태 점검≫

공동주택에서 발주하는 공사 및 용역의 품질 제고와 전문성이 부족한 입주 자대표회의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전문가 자문 사항의 이행여부 확인을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추진

- 점검시기 : 2016. 9~10월
- 점검대상 : 의무관리대상 18개단지
- 점검내용 : 관리규약 준칙 기준에 의한 전문가 자문 시행여부 점검
 - 전문가 자문 의무기준 : 공사(1억원이상), 용역(5천만원이상)
 - 공동주택지원사업 자문 의무기준 : 공사비 2천만원 이상
- 결과조치 : 미이행시 1차 시정명령 후 미이행시 과태료 조치

【주민들 스스로 지켜내는 자율감시체계 구축】

공동주택 온라인투표제 도입(신규)

아파트 입주자대표 선거 등에 휴대폰 등을 이용한 온라인투표를 적극 도입 하여 저조한 투표율을 높이고, 주요 의사결정에도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

○ 사업개요 : 인터넷을 이용한 PC와 이동통신 단말기(스마트폰, 일반휴대폰

등)를 활용하여 전자투표와 개표 실시

○ 사업대상 :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(18개 의무단지)

○ 사업분야 :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선거 및 단지 내 주요사업 의결 등

○ 추진방법 : 시범단지 선정·실시 후 전체 의무관리단지로 확대

○ 비용지원 : 단지별 온라인투표 비용의 2분의1 범위 내 지원

-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 규정을 충족하는 투표시스템 사용

- 동대표 선거, 관리규약 개정 찬반투표 등 1개단지 연간 1회만 지원

지원신청	구청	아파트 단지	구청
(아파트 단지)	(지원심의)	(비용청구)	(지원금 교부)
대상투표 결정 □온라인투표 비용산정	지워여무 :	- 온라인투표 시행 □ - 투표비용 지출 증빙자료	- 투표비용 입금 - 투표율 기록 등

○ 소요예산 : 4.700천원(시비)

「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」 활성화로 주민자율감시 제고(신규)

입주민들이 아파트 관리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해 스스로 찾아보고 비교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을 적극 홍보하여, 입주민들의 자율적인 관심 속에 관리비 비리를 사전에 예방 및 차단하는 효과 도모

○『아파트 관리 궁금증 직접 알아보기』 안내문 제작 홍보

- 대 상 : 의무관리아파트 18개단지(13,182호)

- 제작부수 : 15,000부

- 홍보방법 : 안내문 세대별 배부, 중구광장·지역신문 등 게재

- 홍보내용 : 정보공개 항목 및 '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' 이용방법 등

<<공동주택 정보공개 항목>>

구분	세 부 공 개 사 항	관계법규
법령상 공 개 대 상	【의무공개】 ○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및 회의 의결사항 ○ 관리비등의 부과 내역 ○ 관리규약,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현황 ○ 입주자등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 주요 업무 추진사항 ○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관한 사항 ○ 관리주체 및 관리기구의 조직에 관한 사항 ○ 관리비등 사용량, 장충금 적립요율 및 사용 금액 ○ 주택관리업자 선정에 관한 입찰공고, 선정결과 ○ 사업자 선정 결과 【청구공개】	○영제56조 ○ 고시제14조 ○ 고시제24조
	 관리비 등과 잡수익의 징수, 사용, 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정보 및 증빙자료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회계감사 보고서 	○영제55조제3항
관리규약 준칙	 ○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, 회의결과 ○ 재무제표(재무보고서, 운영보고서, 순자산변동 보고서) ○ 위·수탁관리계약서, 재계약에 관한 내용 ○ 공사, 용역에 대한 입찰공고, 계약에 관한 사항 - 계약서 포함 ●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● 관리비등의 회계감사보고서 ● 관리규약 ○ 입주자등의 건의사항 조치결과 등 주요업무 추진상항 ○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및 집행과 잔액 ○ 잡수입의 수납현황 사용내역 ● 예비비 사용내역 	○ 준칙제37조 ○ 준칙제37조 ○ 준칙제44조 ○ 준칙제48조 ○ 준칙제48조 ○ 준칙제56조 ○ 준칙제56조 ○ 준칙제58조 ○ 준칙제59조 ○ 준칙제59조 ○ 준칙제59조

○ 『공동주택 통합정보 마당』 활성화하여 아파트 운영 투명성 강화

- 관리주체의 의무공개사항 공개 여부 주기적인 모니터링 실시
- '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' 기능 및 운용에 대해 입주민 홍보 강화

〈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〉

-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주요기능
 - . 단 지 정 보 : 단지소개, 입주자대표회의, 관리사무소, 시설정보 등
 - . 회계관리정보: 월별관리비·잡수입및 지출·제무제표 등
 - . 공사 및 용역정보 : 각종공사 및 용역 사업자선정 과정(입찰→접수→계약)
- 관리비(73개 항목)을 자동으로 공개하고, 옆 단지와 비교검색 가능

【공정한 운영시스템 유지를 위한 지도감독 강화】

동별대표자 및 관리사무소장 교육 실시

○ 교육일시 : 2016년 4월 28일 예정

○ 교육장소 : 구청 7층 대강당

○ 교육대상 : 관내 모든 아파트 동대표, 관리소장, 관심있는 주민

- 18개 의무관리단지 동별 대표자 및 관리사무소장 150여명

- 40개 임의관리단지 관리인 및 관심있는 주민 50여명

○ 강 사 : 변호사. 시민단체 등 공동주택관리 관련 외부전문가

○ 교육내용 : 「해서는 안되는 일」에 대한 사례 중심의 가이드라인 교육

- '13~'15 아파트 관리실태 조사결과 주요 지적사례

○ 소요예산 : 950천원 (강사료 450 , 교육자료 500)

『공동주택 관리규약』적기 정비 추진

- 주택법령 개정사항, 빈번한 민원 등을 반영한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이주기적으로 제공되고 있음에도, 적기에 개정되지 않아 민원 다발
- 준칙 개정시마다 개정여부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아파트 관리 지원

공동주택관리 「전문가 자문단」운영

○ 자문단 구성인원 : 2개부문 17개분야 26명

- 공사부문 : 20명

구분	계	전기	가스	싕기	도장	방수 조경	장 방수	조경 래바수	조경 레바수 통	통신	소방		공	장기 수선
1 12	")		건축	토목	수선 계획	
인원(명)	20	2	1	2	2	2	2	1	2	1	2	2	1	

- 용역부문 : 6명

구분	계(명)	청소	소독	계약 · 관리	회계 · 세무	법률	경비
<u>인원(명)</u>	6	1	1	1	1	1	1

○ 자문내용

- 공사, 용역의 필요성 및 시기적합성(수선주기부합, 안전성, 주민불편 정도 등)
- 공사, 용역의 규모 및 비용 적정산출 여부(과도한 물량 및 비용 산정 여부 등)
- 공사 및 용역의 실제 시행에 따른 주요 시방사항 및 특이사항 등

공사 부문	용역 부문
1. 설계 및 시공기준 등 건설관련법령 적합성 2. 설계내용 및 도면·공사시방서 적정성 3. 구조계산 및 구조물 설치·형태 적적성 4. 건설공법 선정 적정성 5. 설계공정, 공사기간 및 공사비 산출 적정성 6. 하자발생 시 처리방법 7. 유지보수 및 관리프로그램 8.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시행 등	1. 노동관련 법령검토(근로기준법 등) 2. 보험관련 법령검토(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) 3. 특정직군관련 법령검토(경비업법 등) 4. 환경관련 법령검토(공중위생관리법 등) 5. 계약관련 법령검토(민법, 상법, 소득세법 등) 6. 표준도급비, 품셈, 일위대가 등 용역비 산출의 적정성 등

○ 처리절차

신청서	}	자문위원	자문결과	홈페이지 공개 및	}	사업 추 진
구청제출 (관리주체)		지 정 (구 청)	구청 제출 (자문위원)	관리주체 통보 (구 청)		(관리주체)

○ 소요예산 : 5,209천원 (구 3,647천원, 시 1,562천원)

추진일정

사업명	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정기실태조사												
지적사항 이행점검												
자체 회계감사 결과 점검												
전문가 자문 이행 실태점검												
장기수선충담금												
온라인투표 도입												



행정사항

○ 온라인 투표 도입을 위한 K-Voting 설명회 개최

- 일 시 : 4월중 (선거 종료후, KT와 일정협의)

- 장 소 : 구청 강당

- 참 석 : 18개 의무관리단지 및 희망단지

▶ 입주자대표회장,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, 관리소장, 관심있는 주민

- 내 용: K-voting 운영방식 등 세부절차 안내

○ 아파트 단지별 주요사항 이력 관리

- 관리대상 : 관내 모든 아파트 단지(58개)

- 관리방법 : 단지별 대장(파일)을 만들어 주요사항 기록관리

- 관리내용 : 행정처분, 지원사업 지원내역, 행위허가 사항 등

- 자료활용 : 지적사항 반복여부, 동일사업 지원 등 확인 가능